KOSHA GUIDE P - 95 - 2016

> 도급업체의 안전관리계획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

> > 2016. 11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###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o 제정자 : 유 철 진 o 개정자 : 서 찬 석

### o 제·개정 경과

- 1995년 9월 화학 및 일반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
- 1995년 10월 총괄제정위원회 심의
- 2001년 5월 화학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
- 2001년 7월 총괄제정위원회 심의
- 2007년 6월 화학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
- 2007년 8월 총괄제정위원회 심의
- 2012년 7월 총괄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, 법규개정조항 반영)
- 2013년 11월 총괄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, 법규개정 내용 반영)
- 2016년 10월 화학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, 법규개정 내용 반영)

### o 관련규격 및 자료

- 국제노동기구(ILO) Convention No. 174, "The prevention of major industrial accidents" 1993
- 미국 공정안전관리제도 규정 : Process safety management of highly hazardous chemical-CFR 1910.119

#### o 관련법규·규칙·고시 등

-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2(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) 및 같은 법 제29 조(도급사업 시의 안전·보건조치)
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0조의 2(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 등)
-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-40호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·심사·확인 및 이행 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)

### 0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
- 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동 지침 내에서 인용된 관련규격 및 자료, 법규 등에 관하여 최근 개정본 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개정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16년 11월 30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# 도급업체의 안전관리계획 작성에 관한 기술 지침

# 1. 목 적

이 지침은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될 내용 중 도급업체의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이를 준수하기 위한 기술 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.

# 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도급업체의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, 이를 실행하는데 적용한다.

# 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 - (가) "사업주"라 함은 유해·위험설비를 보유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사업장으로서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을 준 업체의 사업주를 말한다.
  - (나) "도급업체"라 함은 설비의 점검, 정비 및 공사 등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(이하 "도급업무"라 한다)를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업체를 말하며, 하도급업체 및 협력업체를 포함한다.
- (2) 그밖의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 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 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# 4. 사업주의 의무

사업주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도급업체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P - 95 - 2016

- (1) 사업주는 수급인 사업주와 안전·보건협의체를 구성해야 하며,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·보존하여야 하며, 협의체는 다음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.
- (가) 작업의 시작시간
- (나)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
- (다) 재해 발생 위험 시의 대피방법
- (라) 작업장에서의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
- (마)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
- (2) 사업주는 도급인의 작업장 순회점검은 2일에 1회이상 이루어져야 하며, 합동점검은 수급인을 포함하여 점검반을 구성하고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해야한다.
- (3) 사업주는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.
- (4)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·보존해야 한다.
- (5) 사업주는 화재. 토석붕괴 등 비상시를 대비한 경보 운영체계를 운영해야 한다.
- (6) 사업주는 다음의 유해·위험장소에서의 작업 시에는 안전·보건조치를 해야 한다.
- (가) 토사·구축물·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
- (나) 기계·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
- (다)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
- (라)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
- (마)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
- (바)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 작업을 하는 장소
- (사) 엘리베이터 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
- (아) 도금작업 등 도급금지 작업을 하는 장소
- (자) 화재·폭발 우려가 있는 다음 작업을 하는 장소
  - ① 선박 내부에서의 용접·용단작업
  - ② 특수화학설비에서의 용접·용단작업
  - ③ 인화성 물질을 취급·저장하는 설비 및 용기에서의 용접·용단작업
- (차) 밀폐공간으로 되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장소
- (카)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 또는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

P - 95 - 2016

- (타)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장소
- (파) 유기화합물취급 특별 장소
- (하)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·해체·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
- (거)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
- (너) 프레스 또는 전단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
- (더)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정비·보수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
- (러) 방사선 업무를 하는 장소
- (머)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
- (버)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
- (7) 사업주는 유해·위험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취급하는 설비 등에 대한 수리, 개조, 청소 등의 작업을 도급할 경우에 도급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다음의 안전보건정보를 적은 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.
- (가) 유해물질의 명칭과 그 유해성·위험성
- (나) 안전·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·보건상의 주의사항
- (다) 안전·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
- (8) 사업주는 도급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재해율을 포함한 산업재해 발생현황 등 도급업체의 안전 업무 수행실적, 안전작업 수행능력 및 안전작업 계획 등을 제출받아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하여야 한다. "도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항목의 예시"는 <부록>과 같다.
- (9) 사업주는 도급업체 포함 해당공정 근로자들에게 비상조치계획(최악 및 대 안의 사고 시나리오 포함)의 제공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(10) 사업주는 도급업무 시작 전에 도급업체의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사업장내에서 준수해야 할 안전작업요령 및 안전작업허가서 발급절차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.
- (11) 사업주는 도급업무가 다음과 같이 유해·위험작업인 경우에는 반드시 안 전작업허가서를 발급 받고 작업에 임하도록 하여야 하며, 안전작업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KOSHA GUIDE P-94 "안전작업허가지침"에서 정하는 바에

P - 95 - 2016

따른다.

- (가) 공정물질이 차있거나 차있었던 용기, 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시
- (나) 용접 · 절단 또는 스파크나 다른 점화원을 발생하는 화기작업 시
- (다) 밀폐공간 출입 시
- (라) 위험지역 내에서의 내연기관 운전 시
- (마) 굴착 작업 시
- (바) 전기 작업 시
- (사) 방사능 사용 작업 시
- (아) 고소 작업 시
- (자) 중장비 작업 시
- (12) 사업주는 유해·위험작업 중 화재·폭발 또는 위험물질 누출 등 비상사태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KOSHA GUIDE P-101 "비상조치계획 수립 지침"에 따른 비상조치계획에 포함된 내용 중 도급업체의 사업주 및 근로자가 취해야 할 조치 요령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.
- (13) 사업주는 도급업체의 사업주가 주요 위험설비에서 도급업무 수행 시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 유지토록 하고, 정기적으로 그 결과를 확인·평가하여야 한다.
- (가) 위험설비 운전 중인 도급업체 근로자의 인원
- (나) 안전교육훈련 사항
- (다) 안전수칙 준수 사항
- (라) 작업자의 상해·질병 및 사고사항
- (마) 기타 안전작업과 관련된 사항
- (14) 사업주는 도급업체의 근로자가 위험설비를 운전하도록 할 경우에는 도급 업체 근로자가 준수하여야할 사항을 규정하고, 이를 도급업체 사업주가 관 리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(15) 사업주는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도급업체의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도급업체의 사업주에게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.

P - 95 - 2016

- (16) 사업주는 도급업무 시 업무 관련 부서의 장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여 도급업체의 관리를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.
- (가) 관리부서의 장
  - ① 도급 계약서의 작성
  - ② 도급업체 안전작업 서약서의 작성
  - ③ 도급업체의 산재 가입 여부 확인
  - ④ 도급업체의 평가 및 관리
- (나) 생산부서의 장
  - ① 안전작업허가서의 작성
  - ② 담당 부서의 유해 ·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 교육
  - ③ 도급업체 근로자의 유해・위험작업 중 점검
- (다) 안전관리부서의 장
  - ① 유해 ·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장치 설치여부 확인
  - ② 안전작업허가서의 발급여부 확인
  - ③ 유해ㆍ위험작업 중 안전작업 실시 여부 확인
  - ④ 안전수칙 미준수자에 대한 조치 및 지도
  - ⑤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사업주와 도급업체 대표자간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회의 주관 및 회의록 유지관리

# 5. 도급업체 사업주의 의무

도급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도급업체의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.

- (1) 도급을 준 사업주가 제공하는 도급사업 시의 안전·보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, 소속 근로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, 해당작업에 대한 작업표준 작성 및 작업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
- (2) 소속 근로자들이 화재·폭발, 독성물질 누출의 위험성과 예방에 관한 사항 및 비상조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P - 95 - 2016

- (3) 소속 근로자들이 공정운전을 수행할 경우에는 안전운전지침 및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.
- (4)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, 다음 사항이 포함된 교육 결과를 기록·작성하여 보관한다.
- (가) 교육대상자
- (나) 교육시기 및 시간
- (다) 교육내용 및 강사
- (라) 교육성과 측정 및 평가 결과
- (5) 도급업체 안전교육 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(가) 안전수칙
- (나) 사고 발생시 조치 요령
- (다) 비상사태 발생시 행동요령
- (라) 안전작업절차
- (마) 개인 보호구의 사용법
- (바) 응급조치 기구의 사용법
- (사) 폐기물의 분리수거
- (6) 소속 근로자들이 작업 중에 산업재해 등 급박한 위험요인이 있을 경우, 이를 지체 없이 도급을 준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(7) 소속 근로자들이 공정 내에서 유해·위험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숙지시켜야 한다.
- (가) 위험기계 및 기구는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.
- (나) 안전표지 및 안전장치 등은 규정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, 임의로 변경 사용할여서는 아니 된다.
- (다) 작업장 내에서는 지정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.
- (라) 허가 없이 출입금지 구역내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(마) 금연 구역내에서 흡연해서는 아니 된다.

P - 95 - 2016

- (바) 폭발위험장소내에서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합한 방폭성능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.
- (사) 전기용접기의 홀다 및 전선은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.
- (아) 고압가스용기 운반 시는 반드시 캡을 씌우고, 주의하여 취급을 하여야 한다.
- (자) 고압가스 용기를 옥외에 저장할 때에는 직사광선을 피하고, 전도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(차) 중량물을 이동, 운반 작업은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야 한다.
- (카) 용접작업 등 화기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반드시 인화성·폭발성물질 등 위험 물질을 격리시킨 후 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, 작업 종료 후에는 불씨가 없도록 철저하게 확인하여야 한다.
- (타)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등 발화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는 화기엄 금 표지판을 설치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.
- (파) 유해·위험물질을 사용한 후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.
- (하) 기타 안전사고 예방과 화재·폭발·누출 방지를 위해 감독자의 지시사항 에 적극 따라야 한다.

# 6.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, 승인 및 보존

#### 6.1 안전관리 계획

도급업체의 연간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(1)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 및 내용
- (2) 사업주와 도급업체의 사업주와의 정기적 안전활동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방안
- (3) 안전보건 및 공정안전에 관한 교육계획
- (4) 유해·위험 기계·기구의 방호조치
- (5) 각종 안전장구와 공ㆍ기구의 확보 및 정상상태 유지 방안
- (6) 안전순찰, 점검, 검사 등의 안전활동 및 평가
- (7) 산업재해 발생 기록, 재해 원인 및 동종재해예방 대책
- (8) 기타 안전관리 업무에 필요한 사항

### 6.2 승인

P - 95 - 2016

사업주는 작성된 도급업체의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 확인 또는 보완 후 승인하여야 한다.

- (1) 작성내용의 누락 여부, 내용의 충실성 및 타당성 검토
- (2)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여부 검토
- (3) 기타 안전관리 활동의 적정성 여부 검토

# 6.3 보존

작성된 연간 안전관리계획서는 충실히 이행되어야 하며, 1년 이상 보존 하여야 한다.

KOSHA CODE P - 95 - 2016

# <부록>

# <도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항목의 예시>

| 사 | 업 장 명 | 일 시       |
|---|-------|-----------|
| 주 | 소     | 상주여부      |
| 공 | 정 명   | 작 업 내 용   |
| 대 | 표 자   | 현 장 책 임 자 |

| ઇં}  |            | 목           |          | 배점    | 평점        |  |  |  |
|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|--|--|--|
| 1. 안전에 관한 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안전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|  |  |  |
| 안전관리계획서  | 4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|  |  |  |
| 폐기물 분리 및   | 4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|  |  |  |
| 안전보호구 착용   | 4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|  |  |  |
| 대표자 및 현장   | 4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|  |  |  |
| 안전교육 실시 형  | 4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|  |  |  |
| 안전시설물 설치   | 4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|  |  |  |
| 작업허가서 규정   | 4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|  |  |  |
| 안전관리자의 지   | 4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|  |  |  |
| 산업재해 발생 여  | 8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|  |  |  |
| 소 계  | 40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|  |  |  |
| 안전에 관한 안전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7] 7] (6]) | 안전부         | (01)     | 안전책임담 | - (01)    |  |  |  |
| 평가자 소속   | 리자 (인)     | (과)장        | (인)      | 당 임원  | (인)       |  |  |  |
| 2. 작업에 관한 사항(생산부서 또는 공사감독부서 평가부분)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|  |  |  |
| 작업관련 서류 처  | 리 능력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| 3     |           |  |  |  |
| 작업계획능력   | 3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|  |  |  |
| 사용자재의 적합여  | (3)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|  |  |  |
| 작업인원의 확보   | 6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|  |  |  |
| 작업의 특수성에   | 6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|  |  |  |
| 작업여건의 변화여  | 6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|  |  |  |
| 작업지시의 순응도  | 6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|  |  |  |
| 작업 공정 관리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|  |  |  |
| 작업원의 자질  | 6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|  |  |  |
| 납기 준수 여부   | 6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|  |  |  |
| 작업 기간 중 정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|  |  |  |
| 작업 종료 후 정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|  |  |  |
| 소 계  | 60(63)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|  |  |  |
|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| <b>작업</b> |  |  |  |
| 작업관련   | 성          | (인)         | 부(과)장    |       | 담<br>(인)  |  |  |  |
| 평가자 소속   | 명          | ( )         | 1 ( 1/ 0 |       | 3 8       |  |  |  |
| 첫 게  |            | <b>स्त्</b> | コ ヒ コ    |       | 원         |  |  |  |
| 합계 평가등급   항호: 90점 이상, 보통: 70점 이상~90점 미만, 불량: 70점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|  |  |  |
| ┃ 엽틱업제 평가 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|  |  |  |
| 미만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|  |  |  |